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0월 2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화재 대응 역량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테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행정안전부 「화재 인명피해 분석」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의 약 65%가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41.9%) 또는 ‘연기·유독가스 흡입’(23.8%)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환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대피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유독가스 흡입 위험이 더욱 높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역시 민원인 등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혼잡으로 인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는 점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안전교육과 홍보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개념과 안전교육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 적용대상과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1호제거목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방연마스크는 유독가스 14종 중 6개 항목(염화수소·이산화황·시아노화수소·벤젠·일산화탄소·아크롤레인)에 대한 가스 차단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방연마스크 성능이 인정됨.
- 다만, 안 제나목 및 제다목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현재 방연마스크가 인증 품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향후 인증제품 목록에 추가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사항을 미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및 안 제4조(예산지원)는 구청장이 의료기관,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장소에 방연 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안내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각 시설에 방연 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교육지원) 및 안 제6조(홍보)는 구청장이 방연마스크 사용법 및 화재 대피 요령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안 제6조(홍보)는 구청장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율적인 대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화재피해에 고위험군인 환자·아동·노인·장애인 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 아울러 안전교육, 홍보 등의 조항을 통해 단순한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화재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1
----------	-----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유승용, 김지연, 전승관
남완현, 정선희 의원 (5인)

1. 제안이유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화재 대응 역량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